

■ 특별공급(다자녀가구) 당첨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(계약체결 전 제출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다자녀 특별공급	○		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	-	·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	○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 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·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,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'전체포함'으로 발급)
		○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 포함)	자녀	·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	○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·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		○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·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[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]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·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일 경우
		○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/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※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수 확인이 가능해야 함
	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임신의 경우(당사 견본주택에 비치)
공동 서류	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입양의 경우
	○		특별공급신청서, 특별공급 약약서, 서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	-	·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(인터넷 청약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)
	○	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사항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·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 ·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세대원	·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·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 포함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·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·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을 명시
	○	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입증서류	본인	·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※아래 참고 '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입증서류' 참조
※계약구비서류(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등)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. 계약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					
해외 근무자 (단신부임)	○	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·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- 파견 및 출장명령서 ·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-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·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· 유학, 연수, 관광, 단속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
	○	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및 세대원	·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-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183일을 초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	직계존속	·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 발급.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○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·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포함하여 "상세" 발급. 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배우자 및 직계존비속	·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(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)
제3차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당첨자	· 본인발급용 (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)(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차 대리신청은 불가)
	○		위임장	당첨자	·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신분증, 인장	대리인	·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차로 간주해(직계존-비속 포함) ·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	해당 주택	·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,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·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·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.

※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세대주 기간 선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소형자가 주택을 소명할 수 없습니다.